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호업무보조자 근거 규정 신설 및 보호장비 추가〉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696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감호업무보조자 근거 규정 신설	2
2. 보호장비의 종류에 가스분사기 추가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29.
3.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 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

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보호소년등이 감호실무관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원활한 직무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제8항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감호업무보조자 근거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난동, 폭행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호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시에는 공무원의 지휘를 받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감호업무보조자) ①</u> <u>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방지 조치를 위하여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이하 “감호업무보조자”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u>② 감호업무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u> <u>③ 감호업무보조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생략)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가스충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자해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게 머리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신설>

제14조의3(보호장비의 사용) ①

(생략)

② -----

---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

---.

1. ~ 3. (현행과 같음)

③ -----

---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
-----가스충, 가스분사기나-----
---.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⑤ -----

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감호업무보조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경우 소년원·소년

⑧ (생략) 제14조의3·제14조의4 (생략)	<u>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4조의4·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 법무부훈령인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원장은 기관의 감호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지휘하고, 주무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감호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감호근무자는 공무원으로서 원장 및 주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한편, 감호실무관은 공무원직근로자로서 감호근무자의 지휘에 따라 감호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보호소년등이 규율을 위반하거나 업무수행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감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의 감호업무보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지침에서는 감호실무관이 단독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감호근로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호실무자의 채용요건,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채용요건	- 자격요건: 20세 이상, 무도 3단 이상 단증 소지자 등 - 시험방법: 1차시험(서류전형), 2차시험(면접)	
업무내용	- 감호업무 · 보호소년등의 호송 시 감호 보조 · 보호소년등의 시설 외부병원 진료 및 입원 시 감호 보조 · 보호소년등의 교육훈련 및 면회 시 안전과 질서 유지 보조 · 생활실과 면회장 간 등 생활관 내 보호소년등의 인솔 - 경비·방호업무 · 시설 내 인명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일상경비 업무 · 외부 출입 인원에 대한 안내 및 차량 검색 등	
근무현황	(단위: 명, 2026. 7. 기준)	
	기 관 명	근무 인원 (정원)
	서울소년원	12 (12)
	부산소년원	17 (17)
	대구소년원	17 (18)
	광주소녀원	17 (18)
	전주소녀원	8 (8)
	대전소년원	18 (18)
	청주소녀원	10 (10)
	안양소년원	10 (10)
	춘천소년원	12 (12)
	제주소녀원	8 (8)
	서울소년분류심사원	8 (9)
	안산소년분류심사원	9 (9)
	계	146 (149)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및 제출자료

- 개정안은 보호장비의 사용주체를 감호업무보조자에게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감호업무보조자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 등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감호업무보조자가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감호업무보조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동법의 입법 취지와 유사 입법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동법은 보호소년등의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¹⁾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더욱 두텁게 권익이 보호되어야 할 보호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공무원인 감호업무보조자에게까지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1) 제2조(처우의 기본원칙) ①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호소년등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 발달 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등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해 보임.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주 방지와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의 사용 주체는 교도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감호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공무직을 두고 있지 않음.

<보호장비 사용 관련 유사 입법례>

구 분	보호장비 종류	보안장비 종류	보호·보안장비 사용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수갑 · 포승(捕繩) · 가스총 · 전자충격기 · 머리보호장비 · 보호대	-	감호 근무자 (보호직 공무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 수갑 · 머리보호장비 · 발목보호장비 · 보호대(帶)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보호복 · 포승	· 교도봉, 전기교도봉 · 가스분사기 · 가스총 · 최루탄 · 기체 압력식 발사기 · 전자충격기	교도관 (교정직 공무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 수갑 · 머리보호 장비 · 발목보호 장비 · 보호대(保護帶) · 보호의자 · 보호침대 · 보호복 · 포승(捕繩)	· 교도봉, 전기교도봉 · 가스분사기 · 가스총 · 최루탄 · 전자총	교도관 (군사경찰)

- 또한, 개정안은 보호장비의 사용주체를 공무원이 아닌 감호실무관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년원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감호업무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그 업무의 구체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장비의 사용은 보호소년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에서, 감호업무보조자의 자격요건 및 업무 범위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현행 법령은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그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또한 지침에서는 원장이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호장비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보호장비 사용을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⑥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⑦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3(보호장비의 관리) ① 원장은 보호장비의 관리책임을 지며, 월 1회 이상 소속기관의 보호장비사용실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보관은 별도의 캐비닛에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장비사용 기록부에 기록·관리한다.

④ 유효기간이 지난 가스충의 탄환 및 분사약재 등은 폐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호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위해서는 미리 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그 사용 이유와 내용, 사용시간 등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안 제14조의2 제3항은 감호업무보조자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³⁾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감호업무보조자가 소년원등에서 피감호자에 대한 관리·보호·감독, 시설의 질서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개인 신상과 관련 비밀의 누설을 방지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다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감호근무자 및 감호실무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뇌물수수 등 직무상 비위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감호업무보조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별칙의 범위는 감호업무보조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공공성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체계·자구적 측면에서는 안 제14조의2 제1항은 “사고 방지 조치를 위하여” 감호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감호실무관은 보호소년등의 생활관 내 생활지도, 병원 진료 및 외부 교육훈련 시 동행을 통한 도주·사고 방지, 면회 시 반입 금지 물품 검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라 기존 감호실무관의 역할을 감호업무보조자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경우, 현재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감호실무관의 신분 및 근무관계의 효력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법에 따라 형성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기관의 의견

- 법무부는 감호업무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휘를 받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 법원행정처는 감호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도록 법률로 규율하고 소속 공무원의 지휘하에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고 있음.

다만, 감호업무보조자의 보호장비 사용을 통해 보호소년등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 내용이나 범위 등을 상위 법령에 명확히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보호장비의 종류에 가스분사기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호장비의 종류에 가스분사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② (생략)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u>공무원으로</u>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 외에 <u>가스총이나</u>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u>가스총이나</u>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	제14조의3(보호장비의 사용)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4. 가스분사기</u>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② (생략) ③ ----- ----- --- <u>공무원 또는 감호업무보조자로</u> ----- ----- <u>가스총, 가스분사기나</u> ----- ---. 1. ~ 5. (현행과 같음) ④ ----- <u>가스총, 가스분사기나</u> ----- -----

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⑧ (생략) <u>제14조의3</u> · <u>제14조의4</u> (생략)	-----. -----. -----. ⑤ ~ ⑧ (생략) <u>제14조의4</u> · <u>제14조의5</u> (현행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와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는 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⁴⁾임. 최근 5년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는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보호장비 사용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보호장비별 사용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 갑	10,264	10,438	12,391	13,230	14,196
포 승	9,694	9,496	11,715	12,693	13,858
가스총	3	0	0	1	16
전자충격기	0	0	0	7	14
머리보호장비	84	86	198	211	134
보호대	257	911	666	337	520

자료: 법무부

4)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포승(捕繩) 3. 가스총 4. 전자충격기 5. 머리보호장비 6. 보호대(保護帶)

< 최근 5년간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인원 >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호소년	782	700	807	1,016	1,083
위탁소년	284	328	385	429	460
계	1,066	1,028	1,192	1,445	1,543

자료: 법무부

- 개정안은 보호소년등이 이탈, 자살,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또는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의 종류에 ‘가스분사기’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기존의 수갑, 포승, 가스총 등 만으로는 소년원등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호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 중에서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의 관점에서 기존의 가스총에 더하여 가스분사기를 보호장비의 종류에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가스분사기를 보호장비의 종류에 추가할 경우,

보호소년등의 난동,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호장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소년등과 직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가스총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분말의 가스작용제 등을 발사하는 장비로, 발사 시 화약폭음이 상당한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경찰, 교도관 등 법령상 총포 소지가 허용된 자에 한정하여 사용될 수 있는 장비⁵⁾임.

반면, 가스분사기는 압축가스의 힘으로 최루·질식 작용제를 분사하는 기기⁶⁾로서, 소음이 적고 약제의 분사 범위가 넓어 물리적 위협을

-
-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경비·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함.

이와 같이 가스총과 가스분사기의 작동방식과 특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스분사기의 사용이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호소년등의 신체에 미치는 위험이나 인권 침해의 소지가 더 적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보호장비의 종류에서 가스총을 삭제하고 가스분사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현재 보유 중인 가스총을 폐기할 경우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가스총은 유지하되 가스분사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가스총 및 가스분사기 비교 >

구 분	가스총	가스분사기
대표적 제품 사진		
발사 원리	화약 폭발력	압축가스의 힘
사거리	20m 이내	3~6m
소지 허가 여부	경찰서장 허가 필요 (경찰, 교도관, 경호관 등 법령상 무기 휴대가 가능한 자)	경찰서장 허가 필요
주 용도	범인검거/호신/경비	호신/경비

자료: 경찰청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 참고로, 가스분사기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4항에서 ‘보안장비’에 가스분사기와 가스총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⁷⁾, 「철도안전법」 제48조의5 제2항에서 ‘직무장비’에 가스분사기와 가스발사총을 함께 규정⁸⁾하고 있음.

다.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이 보호장비 종류를 현행화하여 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에서의 감호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강제력의 행사)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2. 자살하려고 하는 때
 3.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5.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6.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서 “**보안장비**”란 교도봉·가스분사기·가스총·최루탄 등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도주의 방지 및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도관이 사용하는 장비와 기구를 말한다.

8) 「철도안전법」 제48조의5(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①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직무장비**”란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피의자 호송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 경비봉을 말한다.

③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직무장비를 사용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및 전자충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052

참 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원을 말한다.
3. (생략)
4. "감호실무관"이란 감호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된 공무원 등 근로자로 소년원등에 배치되어 감호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생략)

제126조(지휘·감독) ① 원장은 감호 업무에 관하여 감호실무관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 ④ (생략)

⑤ 주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을 감호실무관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감호실무관의 감호업무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9조(감호 보조 일반) ① 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 또는 감호근무자의 지휘에 따라 감호보조업무를 수행한다.

② 감호실무관은 감호책임자로 할 수 없다.

제130조(보고사항) 감호실무관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호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3.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한 경우
4.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지득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제132조(단독 감호) 감호실무관이 단독으로 감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의무실 진료, 면회 등을 위하여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보호소년등을 인솔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보호소년등이 이탈·도주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감호근무자의 지휘·감독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CCTV 모니터링 철저 및 특이사항 발생 시 근무자에게 즉시 알릴 것 등)를 받아 단독으로 근무하는 경우
4. 그 밖에 출입문이 시정된 생활관 내에서 감호책임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33조(보호장비의 사용) 감호실무관은 보호소년등에 대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호근무자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할 수 있다.